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4월 15일

나. 발 의 자 : 이지연, 강승수, 김낙관, 김춘남, 김택호, 안주찬, 양진오,
이선우, 송용자, 장미경, 홍난이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5월 7일

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지 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·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
-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(19.2.11)을 반영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향후 내실있게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여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

다. 주요내용

○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 적용함(안 제2조)

- (현행) 외국 중앙정부 차원 공식행사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 개최 국제회의 또는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
- (확대) 구미시장의 요청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또는 의원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국외출장 하는 경우

○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(안 제4조)

- (현행) 위원장 부의장(당연직), 위원 9인(의원 4, 민간 5)
- (변경) 위원장 민간(호선), 위원 7인 이상(민간 2/3 이상)

○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함(안 제5조)

○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

(안 제6조제7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3항)

○ 공무국외출장 제한(안 제8조제1항)

-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
-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
-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
- 심사 결과 재검토인 경우

○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

- 출장계획서 제출 : 출국 15일전까지에서 출국 45일전까지로 변경
- 출장보고서 제출 : 귀국 15일 이내에서 귀국 30일 이내로 변경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상 호

○ 본 「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」은

- 그동안 '규칙'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'조례'로 정하고 규칙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